

韓國 軍事運營分析 學會誌  
第12卷 第1號, 1986. 6.

## 豫備軍 服務制度 發展方向에 관한 考察

張 炳 玉\*

### 1. 序 言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위협은 國家利益 爭취를 위한 競爭的인 敵對關係가 아니라 體制와 理念을 달리하여 우리의 生存自體를 말살하려는 極惡性에 그 特徵이 있다.

또한 협소한 國土와 武器體系의 發達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戰爭은 戰場空間의 全國土化로 前後方의 區分이 모호해지는 기습적인 局地戰이나 國家總力戰 樣相을 띠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南北對決의 특수성과 戰場環境을 고려하여 불매에 우리는 常時 戰爭抑制 및 戰爭勃發時 勝利爭取를 위한 절대량의 국방소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부존자원의 制限國으로서 國家經濟發展이 國防勞力과 함께 同時에 要求됨에 따라 國防에 있어서 經濟的인 國防의 수단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限定된 國防資源으로 國防力을 極大化 하기위한 手段으로써는 平時 小數精銳化된 常備軍을 유지하면서 國防소요의 충족을 위한 代替手段으로 戰鬥準備態勢 및 迅速動員이 보장되는 動員戰力인 豫備軍을 維持하는 길이가 經濟的인 國防體制 具現의 가장 効果적인 方案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제 豫備軍은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한 餘分의 國防組織이 아니라, 오히려 常備軍事力 造成의 寶庫요, 常備軍의 代替手段의 根源을 이루고 있으며, 常備軍과의 戰略的인 戰力配合(force-mix)<sup>1)</sup>이라는 運用概念으로까지 發展되어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의 戰爭抑制效果를 達成할 수 있는 潛在戰力으로서 國防의 主要戰力으로까지 크게 重要性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그동안 軍은 豫備軍

#### \* 國防管理研究所

註 1) 두가지 이상의 戰力の 構成要素를 적절하게 組合하여 全體로서 最大의 任務達成效果를 發揮하게 하는 概念으로서, 단순한 산술적인 合의 效果보다는 그 以上の 乘數效果(synergy-effect)를 노리는 概念이다. 즉 戰力の 育成이나 運用側面에서는 制限된 資源範圍內에서 가장 効率的인 戰力の 建設·維持를 위한 配合를 의미하며, 運用側面에서는 建設된 各 要素의 戰力을 적절하게 構成 配置하여 全體의 最大의 戰鬥力을 發揮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武器體系의 配合, 兵力의 配合, 部隊構造의 配合, 軍間의 配合등 모든 分野에서 適用될 수 있으며, 常備軍과 豫備軍의 戰力配合도 育成과 運用側面에서 同時에 고려될 수 있다.

의 戰力化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指揮管理, 作戰運用 등 運用을 위한 側面에서는 상당한 水準까지 發展이 이룩되었으나, 相對적으로 服務制度를 포함한 育成側面의 制度는 發展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먼저 豫備軍 服務制度에 對한 發展趨勢를 考察, 그에 따른 全般的인 概念을 定立하여, 그 概念에 立脚하여 豫備軍 服務制度에 對한 發展方向을 提示코져 한다.

## 2. 豫備軍 服務制度 發展趨勢

### 가. 우리나라 豫備軍 服務制度 概況

豫備軍이 創設된지도 18년이 흘렀다. 여러 가지 環境變化와 더불어 服務制度上에서 끊임 없는 變化가 要求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豫備軍 服務制度의 根源이 되는 鄉土豫備軍 設置法을 60, 70, 80年代別로 살펴보면 <表-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1.12.27에 鄉土

豫備軍設置法이 제정되었으나 兵役(military service)의 概念으로 豫備軍 服務概念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그후 1968년에는 1.21 사태의 發生을 배경으로 鄉土豫備軍이 創設되면서 實質的인 豫備軍 服務制度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60年代 豫備軍의 概念은 자기고장을 스스로 지키는 市民軍的인 自衛組織으로서 그 任務가 「鄉土防衛」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후 70年代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兵役法上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戰時部隊擴張 및 損失補充을 위한 「戰線動員」의 任務가 豫備軍의 任務에 추가됨으로서 鄉土豫備軍 設置法이 全面 補完되었다. 이에 따라 豫備軍의 運用概念이 常備軍의 一部 補助戰力概念으로 인식되어졌다. 따라서 豫備軍의 특성이 소홀이 된 상비군의 視角에서 豫備軍의 戰力化가 추진되었다. 그후 80年代에 이르러서는 北傀의 全國土同時立體戰場化概念에 따른 總力戰體制에 對應하고 민방위대와의 支援體制를 강화하기 위하여 「民防衛支援」이라는 任務가 추가

<表-1> 우리나라 예비군 복무제도 변천과정

년대	구분	임무	운용개념	복무제도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토방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군적 자위조직</li> <li>전력화개념미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역의무 일부개념 미약</li> <li>68년 이전은 예비군설치법은 제정되었으나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음.</li> <li>68년 예비군창설후 실질적인 복무제도 발생</li> </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토방위</li> <li>전선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비군의 보조전력</li> <li>상비군식 전력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군복무를 부가적인 병역의무로 인식 시작</li> <li>획일적인 연령기준복무제도시행</li> <li>훈련 및 벌칙 강화</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선동원</li> <li>향토방위</li> <li>민방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비군과 상호보완 및 전략적배합 (force-mix)</li> <li>예비군식의 체제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군복무를 병역수행의 일부 개념으로 간주 시작</li> <li>의무부과의 형평성 대두</li> <li>예비군복무여건 개선 노력</li> <li>민방위복무와의 연계성 강화 요구</li> </ul>

되었으며 특히 豫備軍의 運用概念도 常備軍의 一部補助戰力概念으로부터 常備軍과 相互補完의인 戰力配合概念으로까지 發展되었으며, 또한 郷土防衛를 위한 主戰力인 一般豫備軍은 自己의 고장과 직장 즉 郷土固守를 위한 常備軍의 性格의 概念으로까지 그 運用概念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여건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現 우리의 豫備軍服務는 動員豫備軍이 30세, 一般豫備軍 35세등 確立적인 豫備軍 服務終了 年齡固定制를 적용하고 있어 常備軍服務를 일직 志願하여 조기에 服務한 사람일수록 豫備軍服務期間이 길어지는 현상이며, 특히 兵役의 延期特例등의 혜택을 많이 받고 늦게 예비군에 編成된 사람일수록 豫備軍 服務期間이 짧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例를 들면 17세에 現役志願을 한 資源은 豫備軍服務를 20세부터 35세까지 16년간을 服務해야 하는 반면, 現行 制度上 最大의 徵集延期後 29세에 現役服務를 한 경우에는 32세부터 35세까지 불과 4년간만 豫備軍服務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충역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비역과 비교하여 戰術·戰技面에서 현격한 水準差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制度上에서는 30세까지 豫備役出身과 同一한 身分과 資源으로 管理되어 動員戰力 形成에도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豫備軍 服務制度 概況을 살펴보았으나 大體로 당시의 狀況變化에 따른 임기응변적이고 수시보완적인 制度改善이 大部分이었다. 따라서 이제 體系의이며 根源的이고 특히 軍事의 要求인 戰力化(strengthening) 側面과 豫備軍 各個 構成員의 衡平性(equity) 側面이 同時에 調和있게 達成되도록, 豫備軍의 服務區分, 服務期間, 服務與件 등에 對한 概念이 體系의으로 整頓되어 그에

다른 具體的인 制度가 設定되어야 한다.

#### 나. 主要 外國의 豫備軍 服務制度

美國 예비군의 沿革은 1792년 주방위대의 創設에서 비롯되었으며 1908년 의회의 승인 하에 연방예비군 의무단의 발족에서 발전이 본격화 되었다. 美國 豫備軍制度는 現役兵 1名の 유지비용으로 豫備軍 10名을 대체할 수 있다는 費用效果뿐만 아니라 時間制 勤務(part-time job)의 軍隊, 즉 평시에는 生業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訓練計劃에 包含시켜 必要한 軍事訓練을 하는 全國民的 軍事訓練과 全國民的 軍事機能化에 기여하고, 특히 自由民主主義의 번영과 전진을 위하여 평등한 兵役義務로서 자유로운 민주사회속에서 개인의 經濟的·社會的 가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軍事的 價値가 슬기롭게 調和된 國민국개명주의의 모범적 제도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次大戰 以後 美國의 예비군이 동원되어 參戰하였던 예는 <表 2>와 같으며 지난 85년 鄧스퍼리트 訓練에 동원된 美增員軍에도 豫備軍의 比率이 陸軍의 경우 75%에 달하였음을 볼 때 美國의 軍事體制에 있어 豫備軍(연방예비군 및 주방위대 포함)의 役割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表 2> 2 차대전 이후 미국 예비군의 동원사례

시 기	동 원 병 력
2 차대전	25 만명
한국전쟁	100 만명
베를린 위기	14 만 8 천명
쿠바미사일 위기	1 만 4 천명
월남전쟁	3 만 7 천명

美國의 兵役對象者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지원에 의하여 현역군·연방예비군·주방위대 등 3가지 유형의 어느 하나 또는 양자의 조합

으로 兵役을 수행함으로써 兵役을 필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군의 조직구분은 <表 3>과 같이 軍組織別로는 陸軍豫備軍 · 海軍豫備軍 · 海兵豫備軍 · 空軍豫備軍을 包含하는 연방예비군과 육군주방위대 · 공군주방위대를 포함하는 주방위대를 주축으로 하고, 준군사부대의 성격을 띠는 해안경비에비군도 포함시킬 수 있다.

<表 3> 美國 예비군의 區分

군 별		역 종 별
연방예비군 (Reserve Forces)	육군예비군 (Army Reserve)	준비에비군 (Ready Reserve)
	해군예비군 (Navy Reserve)	
	해병예비군 (Marine Corps Reserve)	
	공군예비군 (Air Force Reserve)	
주방위대 (National Guard)	육군주방위대 (Army NG)	퇴역예비군 (Retired Reserve)
	공군주방위대 (Air NG)	
해안경비에비군 (Coast Guard Reserve)		

또한 임무수행을 위한 긴급도에 따라 役種別로는 준비예비군 · 대기예비군 · 퇴역예비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역종별 服務區分에 따른 服務는 <表 4>와 같이 服務期間을 現役服務와 豫備軍服務를 상호 가중치에 의하여 衡平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服務期間의 형태는 年限制와 복무 경로별 차등제라는 發展의 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兵役期間은 6~8年으로 18~

26세 사이에 兵인 경우 現役服務를 마치고 25~26세 정도에는 豫備軍服務를 포함한 兵役義務를 필하게 되어 있다.

● 西 獨

2차대전 이후 西獨은 NATO방위군의 전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國家戰略遂行의 手段으로써 NATO에하에는 야전군단을, 自體防衛를 위하여는 郷土軍團을 유지한다는 概念에 따라 1955年「豫備軍法」을 制定하였고, 1966年에는 豫備軍을 創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豫備軍은 크게 지정예비군과 미지정예비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예비군은 <表 5>에서 보는 바와같이 대기예비군 · 준비예비군 · 보통예비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비군을 의미할 때에는 지정예비군을 뜻하고, 미지정예비군은 민방위대의 機能을 통합하고 있다. 兵役은 15개월을 服務하는 徵集兵과 18~28세 사이에서 지원복무가 가능한 志願兵이 現役服務를 마친후 이어서 豫備軍服務를 服務하게 되는데 그 期間은 2年, 준비예비군 6년, 보통예비군 5년등 13년간으로 되어 있다.

즉 兵役義務로서 現役服務와 豫備軍服務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곧 豫備軍服務를 兵役遂行의 一部概念으로 定立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방체제는 市民軍概念에 기초하고 있으며 國防이 곧 生存權 수호의 전부이기 때문에 「國民이 곧 軍隊」라는 가족군대의 전통적인 기풍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예비군제도의 근원은 4,000여년의 유랑민족으로서의 「역사와 전통」, 세계 각지에서 이주한 국민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 레바논 · 시리아 · 요르단 · 이집트등 아랍세계적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특수한 국방환경」등

〈表 4〉 美國의 예비군 복무제도

구 분	임무 및 성격	편 성	복 무 기 간									
준비예비군 (Ready Reserve)	• 전시즉각소집 동원을 위한 단위부대 및 개별보충요원으로 통제	• 현역 3년이 하 근무자  • 지원자	구 분	기간	3월	6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장	장학생	현역				준비대기			
				비장학생	현역		준비		대기			
대기에비군 (Standby Reserve)	•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M+30 일 이후)	• 현역 4년이 상 복무자 • 준비예비군 필자 • 지원자	교	연방예비군 장교후보생	현역과 같은 수준으로 예비군부대 근무							
				주방위군 장교 후보생	"							
				민간특기 직접 임관	현역		준비		대기			
퇴역예비군 (Retired Reserve)	•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집 • 평시 교육훈련 면제	• 현역 또는 예비군 근무 필자 중 특 수간부요원	사	현역복무	4년	현역				대기		
					3년	현역		준비		대기		
			병		2년	현역		준비		대기		
				지원자	일반	현역훈련	준비		대기			
					특기	현역훈련	대기				8년	
특 징			• 예비군 지원제 병역수행 필(6년~8년) • 현역·예비군·주방위대의 연한제 및 유형별 차등제 어느 하나 또는 조합으로 *병기준 25-26세 병역의무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원으로 하여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랍인들의 적대행위에 대한 자위수단으로서 「하가나」라 불리는 독립전투조직인 통합방위대를 조직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예비군 조직이 시초가 되었다. 즉 「하가나」는 직업별로 자기생업에 종사하다가 일단 유사시 즉각 소집되어 외침에 대응하는 자위조직체였다.

1948년 독립선언 이후 1949년에 국방법이 제정되어 상비군·예비군·민방위대 등이 임무에 따라 조직되었으나 그 모두가 하나의 일관된 병역개념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예비군이

국방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다. 즉 상비군은 유사시 예비군이 동원되어 주력을 형성할때까지 전쟁역제력 및 완충역활과 평시 국지적인 적침에 대한 응징보복력으로써 유지되며, 민방위대는 외침에 대한 경계와 국내의 치안확보, 방공 및 피해복구, 필요시 향토방위 작전을 수행하며 예비군은 전쟁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전투의 주력을 형성하여 국가를 방위하며 평시에는 경제건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같은 예비군은 〈表 5〉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반적으로 21세에 제 1예비역에 편입되어 39세까지 복무하게 되며 44세까지는 제 2

〈表 5〉 서독·이스라엘·북괴의 예비군 복무제도 요약

구 국 분 가	병역제도					예비군복무			
	유형	징집 년령	의무기간	현 복 무 기 간	유 형	복무구분	복 무 기 간	특 징	도 입 가 능 부
서독	징병제 지원제	18세	18-45세	징병: 15개월 지원: 24개월	의무제	•대기에비군 •준비에비군 •보충예비군	• 13년 •연차제	•현역복무후 예비 군연속 복무개념	•복무기간연 한제 •예비군 복 무의 병역 개념화
이스 라엘	징병제	18세	남 : 54세 여 : 34세	남 : 36개월 여 : 24개월	의무제	•제1예비역 •제2예비역 •후비역 (민방위)	• 34년 •연차제	•예비군이 국방의 주력 •예비군 복무기간 장기(민방위대도 병역으로 포함)	•민방위 복 무와의 연 계성
북괴	징병제	17세	18-45세	36-48개월	의무제	•교도대 •노동적위대	• 40년 •연령제	•예비군과 민방위 대 기능 통합(복 무기간 장기) •동원예비군의 전 력강대	

예비역으로써 54세까지는 후비역(민방위대)으로서 복무하게 되어 평균 36년간의 병역기간을 복무하게 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은 특수한 국방환경의 영향으로 병역기간이 길며 상비군·예비군·민방위대 복무가 모두 병역의 연속 개념으로 되어 있다.

● 北 傀

북괴는 6·25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1950.12.21~23일간의 別星里에서의 자체비관 회의에서 「우세한 적과 맞상대 할만한 豫備軍이나 난관을 예견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해방지구에 대한 防衛組織이 불충분하였다」라는 金日成의 비관에서 豫備軍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후 6·25戰爭에 參戰했던 中共軍의 철수에 따라 1951.1月 勞農赤衛隊를 創設함으로써 豫備戰力の 확보에 대한 출

발이 시작되었다.

이어 1962年1月 노동당 中央委員會에서 軍事政策으로 제시한 「4大軍事路線」 중의 하나인 「전인민 무장화」政策에 따라 豫備戰力에 대한 정비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70年代 중반에 접어들면서 교도대를 준상 예비군 수준으로까지 강화하고, 특히 후비력의 주력인 勞農赤衛隊를 60세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의 병영체제를 구축하였다. 그에 따라 豫備軍과 民防衛隊의 機能이 단일조직체제 하에서 指揮管掌되고 있으며 군·관·민·예비군이 통합된 후방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社會機能과 地域防衛 機能이 體系的으로 연결되어 있다.

豫備軍이라 볼 수 있는 그들의 服務期間은 〈表 5〉에서와 같이 현역복무 기간을 필한 후 40세까지 교도대로 편성되어 전시 즉각 동원

토록 組織되어 있고 60세가 되어야 兵役義務를 履行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人的資源面에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豫備軍 服務制度의 일반적 발전추세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豫備軍 服務制度의 變遷過程과 주요의국의 豫備軍 服務制度를 종합하여 一般적인 豫備軍 服務制度의 발전추세를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豫備軍 服務를 「兵役遂行의 한 주요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상비군 복무와 병행 또는 연속복무 概念으로 豫備軍服務를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인 兵役制度의 관점에서 豫備軍 服務制度를 다루고 있다.

둘째, 豫備軍 服務制度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즉 상비군 복무제도와 동등수준의 내용과 깊이로 服務區分, 服務期間, 施設, 給與, 人事管理 등의 豫備軍 服務制度를 분야별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셋째, 軍事的 要求인 戰力化를 위하여 상비군 복무와의 연계성을 향상하고 있으며 豫備軍 各개 구성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服務期間의 「일정연한제」(일정기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넷째, 앞으로 예상되는 戰爭은 軍事力의 대결만이 아닌 全國力의 대결이란 관점에서 豫備軍服務를 國家總力防衛體制 構築의 일환으로 民防衛服務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豫備軍 服務制度의 一般적 發展趨勢를 要約해 보면 각국은 자국의 國防目標과 실정에 맞는 상비군의 질적인 정병육성을 위한 대체방안으로써 量에 의한 多兵主義의 원천을 형성하고 있는 豫備軍의 服務制度를 體系적이고 合理的인 方向으로 發展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3. 豫備軍 服務制度 發展方向

#### 가. 豫備軍 服務制度의 概念

우리나라의 예비군 복무제도의 發展이 그동안 現實的인 運用側面에 主眼을 두다보니 명확한 概念의 정립이 모호한 狀態에서 시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豫備軍 服務制度의 概念을 살펴봄에 선행하여 豫備戰力, 豫備軍, 豫備軍制度 등에 대한 概念을 一般적인 관점과 現우리의 制度를 배경으로 알아보겠다.

#### ● 예비전력 (reserve components)

세계 各국은 그들이 처해있는 國防環境과 國防目標에 따라 자기 相異한 軍事組織을 維持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組織으로 大別할 수 있다.

① 現役으로 징·소집되어 任務를 수행하고 있는 상비군(active components)

② 兵役義務의 한 過程으로서 現役服務를 마친 豫備役 등으로 構成되는 豫備軍(reserve components)

③ 일부 무장은 되어 있으나 정규군사조직이 아닌 치안경찰, 해안경찰, 주방위대 등과 같은 준 軍事組織(paramilitary componets)

以上の 3가지 軍事組織中 豫備戰力은 위의 ②, ③항을 包含하는 것으로 그 概念을 좀더 명확히 정의하여 보면 「豫備戰力은 常備戰力에 對應되는 概念으로서 總力防衛戰力(total forces)의 構成內容中 常備戰力 이외의 비상시 軍事力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體制化되어 있는 人力, 物力, 精神戰力등의 全戰力」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 예비군(reserve forces)<sup>2)</sup>

Morris Janovitz 는 일반적인 豫備軍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구분 정의하고 있다.<sup>3)</sup>

① 대기예비군(standby reserve forces)

이는 中央政府(central government)가 직접 組織·統制하는 陸·海·空軍의 예비역 자원중 일단유사시 가장 신속히 동원될 수 있는 일종의 대기작전군(operational military)을 지칭한다.

② 組織化豫備軍(organized reserve forces)

이 組織 역시 中央政府가 직접 組織·統制하는 豫備軍 이지만 이의 效率인 동원 및 통합(mobilization and integration)에는 대기예비군보다 더많은 時間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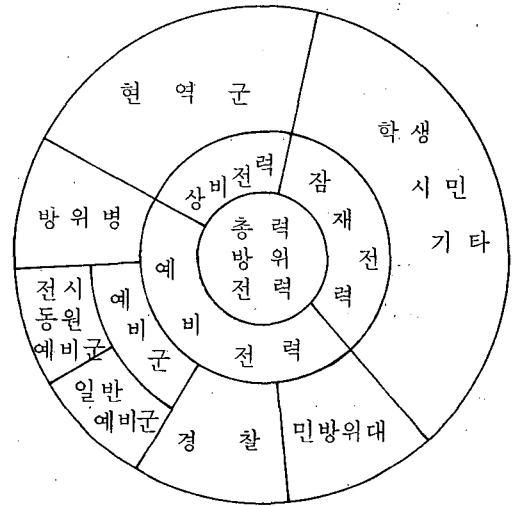
③ 민병(milita)

國防을 위한 豫備組織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 國家에서 적용되고 있는 市民軍概念의 制度로서 豫備軍보다 潛在인 戰力으로서 根源을 이루고 있다.

以上과 같은 豫備軍의 일반적인 概念을 종합

하여 정의하여 보면 「豫備軍은 豫備戰力의 構成要素中 비상시 軍事力(military power)을發揮할 수 있도록 組織化된 軍事的 集團」이라 정의할 수 있다.

郷土豫備軍 設置法에 의한 現 우리나라 豫備軍의 範圍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시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국가 총력방위전력 구성도<sup>4)</sup>

註 2) 「豫備軍」이란 號稱은 우리의 豫備軍制度 도입과정에서 Reserve 라는 概念을 常備軍作戰部隊의 一部로 즉 「교전초에 후방에 위치시키거나 보유했다가 결정적인 運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部隊의 일부」라는 概念의 豫備隊라는 뜻으로 번역된 號稱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의 제도상 豫備軍의 역할(任務·機能)을 살펴볼때 豫備軍은 2가지 分野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선동원을 위한 動員戰力과 地域單位 郷土防衛를 위한 郷土防衛戰力으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역할(任務·機能) 상으로 보아 豫備軍이란 動員戰力인 動員豫備軍을 의미하며, 郷土防衛를 위한 主戰力으로서 豫備軍은 役割이 常備軍 性格의 것이기 때문에 本來의 의미하는 役割에 맞도록 號稱이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예를들면 動員戰力 側面의 豫備軍은 「動員軍」으로, 郷土防衛戰力 側面의 豫備軍은 「郷土防衛隊, 혹은 郷軍, 市民軍」등으로 말이다.

註 3) Morris Janovitz, "Military Institutions and coercion in the developing Nation" Chicaco Univ. Press, 1977. 參照.

註 4) 常備戰力, 豫備戰力, 潛在戰力間에 있어서 명백한 區分이 안되고 이중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防衛兵과 民防衛隊이다.

즉 防衛兵은 그 의미상 豫備戰力으로 分類할 수 있으나 運用上으로 볼때 상당히 現役軍과 유사한 성격을 띠며, 民防衛隊는 組織化는 되어 있으나, 機能上 潛在戰力의 성격도 함께 띄고 있다.



● 豫備軍制度 (reserve forces system)

豫備軍은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한 여분의 軍事組織이 아니라 國防을 위한 필수적인 軍事組織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豫備軍制度 역시 軍事制度의 한 分野이므로 일반적인 軍事制度의 概念으로부터 豫備軍制度의 概念을 도출하여 보겠다.

軍事制度란 國家가 軍事力을 건설하여 有效하게 活用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실제 및 潛在의인 軍事力量을 여하히 發展·支援·統制할 것인가 하는 方法을 提示하여 주는 制반규정 制度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國家가 戰爭遂行을 위한 制반 준비(軍備)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制반 制度를 軍事制度라 한다. 환언하면 軍事制度는 軍事를 다루는 일체의 制度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軍事制度의 한 分野로써 豫備軍制度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豫備軍制度는 豫備軍의 軍事力量을 여하히 育成 運用할 것인가 하는 方法을 提示하여 주는 전반적인 規程」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包含하고 있는 內容은 服務制度·指揮管理·資源管理·教育訓練·作戰運用 등이다.

● 예비군 복무제도 (reserve forces duty regulation)

이상에서 豫備戰力·豫備軍·豫備軍制度에 대한 概念을 정의하여 보았다.

이어서 筆者가 중점적으로 考察하여 提示하고자 하는 豫備軍 服務制度에 對한 概念을 알아보겠다.

豫備軍 服務制度란 「豫備軍의 任務遂行을 위한 各個構成員의 종사규정」이라 정의할 수 있는바, 이러한 服務制度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는 <表 6>에서 보는 바와같이 社會的 側面에서는 國家體制, 社會意識構造, 教

育文化水準, 經濟生活水準, 民生保護 등을 들 수 있으며 軍事的 側面에서는 敵의 위협, 國防戰略, 國防소요 등을, 管理的 側面에서는 資源의 規模, 이를 管理할 수 있는 行政能力, 편의성, 效率性 등을 들 수 있다.

<表 6> 예비군 복무제도 결정요소

사회적 측면	군사적 측면	관리적 측면
국가체제의 식 구조	적의 위협	자원 규모
교육문화수준	국방전략	행정능력
경제생활수준	국방소요	편의성
민생보호		효율성

이와같은 결정요소를 기초로 하여 살펴볼때 결국 豫備軍 服務制度는 根本的으로 社會的인 環境을 배경으로한 豫備軍 各個構成員의 형평성 (equity)과 軍事的要求인 戰力化 (strengthening)가 調和되고 管理의 效率性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그 成果는 制度의 合理的인 運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豫備軍 服務制度의 범위는 복무에 관한 全般的인 分野가 있는데 本稿에서는 服務 區分, 服務期間, 服務與件 등을 中心으로 기본 방향만을 제시토록 하겠다.

나. 豫備軍 服務制度 發展方向

本節에서도 역시 豫備軍, 豫備軍制度에 대한 전반적인 發展方向을 먼저 제시하고 그 맥락에서 豫備軍 服務制度에 대한 發展方向을 分野別로 提示하고자 한다.

(1) 豫備軍 長期發展方向

<基本前提>

豫備軍 長期發展을 위한 기본전제로서는 國防目標達成의 수단으로서 戰力을 유지하고 제한된 가용자원으로 戰力을 極大化 하기 위하여 常備軍과 豫備軍間의 최적전력구조를 發展시

김으로써 國防에 있어서 經濟性을 達成해야 한다.

따라서 常備軍과 豫備軍을 분리한 國家防衛 戰略概念은 있을 수 없고 國防企劃管理體系의 前 단계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基本前提에 입각한 豫備軍 長期發展方向은 다음과 같다.

〈長期發展方向〉

6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豫備軍은 常備軍을 위한 하나의 보조전력 概念으로 運用되어 豫備軍 본연의 任務의 하나인 鄉土防衛의 주전력으로 活用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였다.

70年代 접어들면서 北傀는 戰後복구를 完了하고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總力戰體制를 構築하여 대소부대의 배합전, 정규전·비정규전의 배합전, 불의의 기습작전등을 통한 전국토 동시입체전장화를 획책하고 있는 한편, 우리의 국방체제 또한 對美依存的 國防體制로부터 자주적 國防體制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예비군은 우리의 정책전환과 北傀의 威脅에 効果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을 위한 급속전력형성과 經濟的인 戰爭抑致力(war deterrence)으로 育成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潛在戰力を 組織供給하고 鄉土의 安全防衛를 위하여 常備軍과 그 任務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 相互補完的인 運用概念으로까지 發展되었다. 즉 <表 7>에서 보는 바와같이 80年代에는 軍事力의 구조적 개선을 통하여 常備軍과 豫備軍을 戰略的 配合(force-mix)으로 그 運用概念을 정립, 最大의 戰力 승수효과(synergy-effect)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의 國防豫算으로 最大의 戰力增強을 도모하고 있는 狀況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90年代에는 예상되는 北傀의 위장 평화공세 및 군비축소제의 狀況에도 能動的

〈表 7〉 예비군 장기발전방향

- 자주국방을 위한 급속전력형성 및 경제적인 전쟁억제력(war deterrence)으로 육성
- 전력의 구조적 개선을 통하여 상비군과 전략적 배합(force-mix)개념으로 운용
- 전투준비태세 및 동원속도 향상으로 상비군 임무를 점진적으로 대체
- 생존권 수호를 위한 향토자위력의 주축으로서 민방위대와의 연계성 강화
- 적정규모의 자원을 유지함으로써 질적 개선을 통한 정예화를 촉진하고 국민생계를 보호
- 범국민 총력방위체제의 구체화 방법으로써 국가안보정신 고취의 핵심체로 유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상비군과 상호 보완 및 전략적 배합	상비전력 임무 대체능력 증대	방위 주전력 형성

- 급속 전력 형성
- 전쟁억제력으로 육성
- 안보정신 고취 핵심체

로 대처, 우리의 의도대로 國防問題를 主體性 있게 유도할 수 있도록 常備軍 任務를 대체할 수 있는 分野의 能力을 증대하여 潛在的인 力量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2000年代에는 전시 즉각 동원이 곤란한 고도기술소요부대 및 핵심지역 방어부대(해·공군부대, 기계화 부대, 주력포병 부대, 통신정보, FEBA "A" 방어부대, 특공부대 등)는 정예 常備軍으로 維持하고 타격 및 공세이전을 위한 主戰鬪 및 鄉土防衛 主戰力은 예비군(動員戰力)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록까지 發展시켜 명실공히 豫備軍(動員戰力)을 國防의 主戰力으로 育成함으로서 평시 최소의 정에 常備軍 維持라는 國防思想을 언젠가 있을 統一祖國의 國防體制의 골격으로 삼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長期發展方向을 提示함에 있어서 年代別 時差에 關係없이 전시급속전력의 형성, 經濟的인 戰爭抑制力으로 育成, 全國民에 대한 安保精神 고취의 핵심체 역할유도 등의 內容은 항시 基本的인 概念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 (2) 豫備軍制度의 發展方向

전항에서 제시한 豫備軍의 長期發展 方向을 기초로 하여 豫備軍의 服務, 指揮管理, 教育訓練, 作戰運用등 豫備軍制度에 대한 發展方向을 考察하여 보겠다.

〈表 8〉에서 보는바와 같이 豫備軍 服務는 「兵役의 중요한 한 過程」으로 概念을 정립하여 常備軍 服務와 民防衛隊 服務間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軍事的 要求인 戰力化. 側面과 軍備豫各個構成員의 衡平性이 調和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發展되어야 하겠다.

특히 兵役의 연장선 상에서 豫備軍 服務를 일관성 있게 다루어, 常備軍 服務를 위한 선병과정에서부터 豫備軍 服務까지 고려하여 국민개병주의 精神과 國民의 信賴에 부응한 형평성이 維持되도록 兵役制度의 部分的이며 임기응변적인 개선이 아닌 즉 兵役特例 규정을 再檢討하고 「자기출퇴근 현역병제도」<sup>5)</sup> 도입등을 包含한 徵兵制度 전반에 대한 根本的인 改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8〉 예비군제도 발전방향

구 분	발 전 방 향
복 무	• 병역의 주요과정으로서 상비군, 민방위복무와 연계성을 유지하여 형평성과 전력화 달성
지휘관리	• 임무 및 동원긴급도에 따른 지휘관리 구분의 명확화 • 행정조직 중심의 향토방위체제
자원관리	• 적정규모 자원의 질적인 정예화 관리 • 예비군 관리요원의 전문화 및 업무의 전산화
교육훈련	• 임무특성에 따르는 자율교육 체제 확대 • 생존기반수호의지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 강화
작전운동	• 전시 급속동원체제 확립 • 향토 고수를 위한 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 구축

왜냐하면 戰力構成의 基本인 各個人的 衡平性이 상실되었을 때는 대국민화합 및 단결에 결정적 저해가 될 뿐만아니라 軍의 사기에도 莫大한 影響을 끼쳐 戰力の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豫備軍 指揮管理 側面에서는 現在의 動員豫備軍·一般豫備軍의 區分을 任務 및 동원긴급도에 따라 재 설정하여 초기 긴급단계 동원자원의 指揮管理를 效率化하고 특히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地方自治制等 社會 및 行政構造의 地方分權化 추세에 부응

註 5) 자기 출퇴근 現役兵制度란 필자가 제안한 구상으로서 現役兵制度의 근원적인 改善과 함께 징집이며 자원해소 方案으로서 도입된 現防衛兵制度를 점진적으로 廢止하여 國民의 형평성과 軍의 戰力化가 동시에 達成될 수 있도록 한 制度로의 그 基本 概念은 軍의소요, 地域의 特性, 個人的 希望等에 따라 자비에 의한 現役(兵役) 복무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여 郷土防衛 體制도 行政組織 中心의 指揮 構造로 改善, 地域單位 共同防衛 概念으로 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450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豫備軍의 人力資源管理은 자원 확보 보다는 적정규모의 資源 유지로 質的인 警備 管理가 要求된다. 특히 豫備軍 指揮管理 要員은 豫備軍의 特性에 맞는 人事管理制度의 적용으로 전문화를 이룩하고, 방대한 資源의 管理를 業務의 進 善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豫備軍 教育訓練은 戰線動員, 郷土防衛等 任 務機能에 따라 스스로 參與할 수 있는 基 礎조성을 위한 自律教育體制를 확대하고, 특히 生 존기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精神教育이 地 域 特性和 歷 史的인 傳 統의 史 蹟에 부 합되게 실 시 되어야 하 겠다.

또한 豫備軍의 作戰運用은 平時 民과 軍의 양면적인 신분상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 리가 대 치하고 있는 敵의 威 脅이 특 수함을 고 려할 때 戰 時에 급 속동원체제를 確 立하는 것 이 무 엇보다도 중 요하다.

動員의 本質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人 的· 物 的 戰 力을 최 적기에 조 직구 성하는 것 이 다.

따라서 「戰時急速」이란 概念은 빠르지도 느 지도 않은 戰 勝이란 최 종결과를 獲 得할 수 있 는 최 적기를 뜻하는 것이다. 만 일 戰 時動員이 能 力 및 威 脅에 대 한 판 단 결 함때문에 지 나 치 게 빨 리 동 원 되 었 을 때 에 는 그 戰 力을 유 지 관 리 하 는 데 는 엄 청 난 人 的· 財 政 的 낭 비가 수 반 될 것 이 다.

現在 一般豫備軍을 주 축으로 한 郷 土 防 衛 作 戰은 常 備 軍의 作 戰처 럼 비 교 적 單 순 한 原 則 下에 同 質 化 되 어 있 는 作 戰 要 素들 만 이 아 닌 郷 土 地 域 內에 산 재 되 어 있 는 各 양 各 색의 集 團 階 層들이 모 여 公 同 生 活 圈을 形 成하고 있 는 要 素 들 이 란 점 을 깊 이 認 識 하 여 各 人 들이 소 속 되 어 있 는 集 團 이 나 階 層의 利 益을 대 변 하

면서 郷土防衛라는 共同目標에 同化 參與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공동방위 체제를 發展·實施해야 할 것이다. 즉 郷土防衛作戰은 戰術運用에 대한 基本原則과 方向은 통일되어야 하나 運用에 있어서는 融通性和 分權化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豫備軍 服務制度의 發展方向

以上에서 豫備軍 長期發展方向, 豫備軍制度의 發展方向을 簡略히 살펴보았다.

본항에서는 이제 提示하고자 하는 주 대상인 豫備軍 服務制度에 대 한 發展方向을 앞 에서 살펴본 概 念들에 부 합되도록 보 다 구 체 적 으 로 제 시 하 고 자 한 다.

#### <전 제>

豫備軍 服務制度의 發展을 위한 전제로서는

- 國防分野의 政策 및 實務遂行에 있어 모든 擔 當者들은 豫備軍 服務를 「兵役遂行의 主 要過程」으로 認 識 하 여 야 하 겠 으 며,
- 軍事的 要求인 戰 力化 側 面과 豫 備 軍 各 個 構 成 員의 形 평 성이 동 시에 調 和 있 게 추 구 되 어 야 한 다.

#### <長期 發展方向>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하여 豫備軍 服務制度의 長 期的인 發展方向을 構 想 해 보 면 <表 9>와 같 다.

우선 80년대에는 豫備軍服務를 「國民兵役의 一部概念」으로 정착시켜 義務부과의 形평성을 제고하고 常備軍 服務와 民防衛隊 服務와의 연계성을 증대하며, 國力 및 經濟社會 與件의 發展趨勢에 병행하여 豫備軍 服務與件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 겠 다.

90년대에는 豫備軍 服務制度를 常備軍 服務制度和 동등수준으로 끌어올려 體系的이고 具體的으로 發展시키며 戰力화와 形평성을 동시에 達 成 하 여 하 다.

그리고 長期的으로 2000년대에는 國家體制가 先進國型으로 發展될 것으로 豫想하여 國

〈表 9〉 예비군복무제도 장기발전방향

80 년 대	90 년 대	2000 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 복무를 병역의 일부로 정착</li> <li>• 형평성 및 연계성 강화</li> <li>• 복무여건의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비군 복무제도와 동등 수준의 예비군 복무제도의 체계화</li> <li>• 전력화 및 형평성 동시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 복무를 병역의 주요 과정으로 확립</li> <li>• 예비군 복무의 지원제 및 복무과정 선택제 도입</li> </ul>

防을 위한 兵役制度 역시 豫備軍服務를 包含하여 先進國型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先進國型 服務制度란 물론 우리의 國防環境에 따라 상당한 加變성을 內包하고 있긴하나 모든 義務의 劃一的인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本人의 參與意思가 반영된 選擇의 機會가 가미된 服務制度를 말한다. 즉 本人 스스로 選擇 결정한 服務에 대하여 열성과 責任을 다할 수 있게 하는 高次元의 服務制度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兵役制度의 概念中에는 일부 선택적인 지원제도가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 制限된 概念이며 常備軍 服務와 대등한 입장에서 豫備軍 服務를 兵役의 일환으로

보고 선택의 機會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2000年代에는 兵役服務者는 일정한 範圍內에서 常備軍과 새로 定立된 概念의 豫備軍服務를 선택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고 또한 設定된 豫備軍 選병기준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豫備軍服務經路에 대한 선택의 機會를 부여함으로써 國防을 위한 人的要素에 對한 管理制度를 先進化 해야 할 것이다.

〈發展方向〉

以上과 같은 전제와 長期發展方向을 기초로 하여 豫備軍 服務制度의 發展方向을 좀더 具體的으로 提示하여 보면 〈表 10〉와 같다.

〈表 10〉 예비군 복무제도의 발전방향

관 련 환 경	발 전 방 향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식구조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복무기간 차이 해소</li> <li>- 역종별 복무경로 및 방법구분</li> </ul> </li> <li>• 예비군 신분보장 및 책임·권한의 명확화</li> <li>• 교육훈련 시기 및 방법의 자율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한제</li> <li>• 차등제</li> <li>• 교육훈련차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및 생활 수준의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수준에 상응한 복무여건의 향상</li> <li>• 복무의 선택가능성 제시</li> </ul>	복무선택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의 중요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 복무제도의 체계적 법령정비</li> <li>• 임무 기능에 따른 예비군 조직구분의 합리적 정립</li> <li>• 예비군 특성에 맞는 선병기준의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무개념 정립</li> <li>• 조직구분 재정립</li> <li>• 선병기준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의 자원분포의 불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무 지역별 차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등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귀의 위협상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화를 위한 상비군 복무와의 연계성 향상</li> <li>• 민방위 복무제도와의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우위 견지</li> </ul>

〈表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50, 60, 70 年代와는 달리 社會意識 構造의 급진적인 變化趨勢에 따라 豫備軍 服務期間도 個人마다의 形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일정기간제인 「年限制」의 도입이 要求되며 豫備軍 服務區分도 現役 服務, 실역필복무, 전입복무, 특례복무자등에 대한 區分方法을 服務期間과 연계시켜 즉 「차등화」하여 과거 服務經력에 따른 戰力化를 도모할 수 있도록 區分해야 하겠으며 또한 豫備軍 教育訓練도 年間教育訓練 計劃을 作成하되 단위부대별로 공고하여 豫備軍 隊員들의 職場과 生業計劃이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教育訓練에 自律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동기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豫備軍 服務與件은 주로 教育訓練時 教育場, 教育施設, 裝備, 環境等이며 특히 動員訓練을 위한 부대편성 訓練時 지원되는 천막, 피복, 침구, 급식등의 內容들로서 現 우리의 經濟 및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 보다많은 投資와 관심을 집중시켜 豫備軍 隊員들로 하여금 常備軍 服務시절의 향수와 軍에 대한 愛着心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長期的으로 豫備軍의 重要性은 계속 증대될 것인바, 그 重要性에 부합되도록 豫備軍 服務를 위한 制度, 方針, 指示等은 豫備軍의 身分上의 特性을 고려하여 體系的인 法令이 整備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豫備軍의 組織區分을 現在와 같이 一般豫備軍, 動員豫備軍 等 任務와 役割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전시 즉각 동원이 요구되는 資源은 「動員軍」으로 區分하여 準常備軍化 概念으로 管理運用토록 하고, 一般豫備軍은 全·平時 郷土防衛를 위한 主戰力으로 향토고수 概念에 의한 「郷土防衛隊」로 명명구분하여 郷土防衛를 위한 常備軍 概念으로 管理運用토록 제안하는 바이다.

現 兵役의 선병기준은 常備軍 징집시 適用된 선병기준에 의거 兵役義務가 시작되어 常備軍

服務期間中 전술전기의 숙달과 環境 및 적성의 開發이 현저히 變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豫備軍 服務를 필하게 될때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豫備軍 個人別로 특기와 좋은 자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집중운용을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常備軍 服務를 필하고 豫備軍 服務로 전환될 시점에서 適用될 수 있는 豫備軍 任務 特性에 맞는 「선병기준」이 새로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개방체제에서 거주이전의 自由가 보장된 社會이기 때문에 人口의 이동이 심하다. 따라서 產業構造와 生活環境에 따라 豫備軍 資源의 都市, 農村, 海岸, 도서지역등 分包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豫備軍 資源分包的 불균형 현상은 安保上 많은 취약점을 內包하고 있는바, 이는 地域別 豫備軍服務의 「차등화」를 制度的으로 發展시켜 안보취약점을 補完토록 하고, 특히 北傀의 威脅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을 직시하여 軍備競爭的인 視角에서 벗어나 豫備軍을 常備軍과 民防衛隊等 연계성을 향상하여 對北傀 상대적인 우위전력을 豫備軍을 주축으로 하여 확보토록 改善하여야 하겠다.

#### 4. 結 言

앞으로의 우리 社會는 개방체제의 自律性과 스스로의 責任과 權限이 要求되는 先進國으로 머지않아 發展할 것이다.

따라서 兵役義務의 일환인 豫備軍 服務역시 個人 豫備軍 構成員의 意思와 希望이 가미된 形평성이 제고될때 總力安保體制 構築의 밑거름인 豫備軍의 戰力化는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 參 考 文 獻

1. 國防部, 國防關係法令集